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처리(중과예외_삼성동)

*****은 법인설립 및 증자를 위해

*****을 납부하고 법인등기를 하였으나, 지방세기본법 제51조 【경정 등의 청구】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【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】 규정에 의하여

경정청구 함에 따라, 관련서류를 검토 후 경정결정(부과취소) 하고자 합니다.

가. 청구내역

- 청구인 : *****
- 과세물건 : *****
- 청구내용 : 대도시 중과예외업종에 따른 차액분 취소
- 감액총액 : *****

나. 경정내역

*****	*****	***	*****	*****	*****	***
***	***** **	***	***** *	***** *	***** *	***** *****
*****	*****	***	*****	*****	*****	*****

다. 관계법령

- 지방세기본법 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 및 동법시행령 제30조(후발적사유)
- 지방세법 제28조(세율)
-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(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)
- 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5항(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)

라. 검토사항

- 경정청구대상 적정 여부.
-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업종 해당 여부.

마. 검토결과

- 지방세기본법 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가 개정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(기존 3년)이내 경정 청구 가능.(2015. 5. 18.개정)

- *****를 본점소재지로 ***** 도소

